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00

발의연월일: 2024. 10. 7.

발 의 자:조계원·김문수·강준현

민형배 • 박해철 • 김우영

양문석 · 김기표 · 박민규

윤준병 • 박희승 • 허성무

이기헌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·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, 운동경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·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,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,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,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·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제2항, 제49조제1호 및 제51 조제4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2항 중 "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"을 "입장권등을"로 한다.

제4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제49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.

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49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,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운동경기 입장권・관람	제6조의2(운동경기 입장권・관람
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) ①	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누구든지 <u>「정보통신망 이</u>	② <u>입장권등을</u>
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	<u>.</u>
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	
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	
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	
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	
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	
제4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49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	
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	
벌금에 처한다.	
<u><신 설></u>	1.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
	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
<u>1.·2.</u> (생 략)	<u>2.·3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
	같음)
제49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	제49조의2(벌칙)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	
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	
의 벌금에 처한다.	
1.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	<u><삭 제></u>

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

2. (생략)

제51조(몰수 · 추징) ① ~ ③ 제51조(몰수 · 추징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2. (현행과 같음)

(현행과 같음)

④ 제49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 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 할 수 있으며,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.